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1. 12 선고 2022가단1050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2. 12. 22.

판 결 선 고 2023. 1. 12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21. 12. 1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2. 6. 29. 접수 제41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E(이하 'E은행'이라고 한다)은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

2018가소2496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. 4. 10. 위 법원으로부터 'D는 E은행에게 8,453,498원 및 그 중 3,123,971원에 대하여 2008. 6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9. 4. 27. 확정되었다.

나. E은행은 2020. 5. 12.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고 한다), 원고는 2020. 7. 14. E은행을 대리하여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다.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1411호로 D를 상대로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소24969호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2021. 6. 24.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21. 11. 18. D에게 송달되었다.

라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은 망 F의 소유였는데, 망 F은 2021. 12. 12.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G, H, D, I, J가 있다.

마. D와 피고, G, H, I, J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'라고 한다)를 하고, 피고는 2022. 6. 2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2. 1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시가 10,769,230원(= 시가 70,000,000원 × 상속지분 2/13, 원 미만 버림)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,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리금 23,619,050원(= 8,453,498원 + 3,123,971원에

대하여 2008. 6. 19.부터 2021. 12. 12.까지 연 36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,165,552원)이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D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,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되는 것이고,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(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1281 판결).

살피건대, E은행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소24969호 대여금 청구 소송 및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1411호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D에 대한 소장부분 등이 D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, 갑 제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, D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1411호 집행문 부여의 소의 소장부분 및 첨부 서류가 공시송달될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이므로, D가 채권양도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¹⁾.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.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입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도 추인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망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단독상속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피고와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·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이를 단독상속하게 된 것일 뿐이고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

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, 피고가 D의 모친으로서 혈족관계에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 한편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(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),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하경

별지

1) 뿐만 아니라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,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(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31751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그 발송 무렵인 2020. 7. 14.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